

# 미래전략위원회 규정

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9. 1. 17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미래전략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의 발전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,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한 미래전략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학·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두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.

**제3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 1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특성화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
– 대학 발전계획 세부 운영지침은 별표1에 따른다<신설 2019.1.17.>

2. 주요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

3. 중장기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

4. 기타 기획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

**제4조 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본 회의와 분과회의로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
③ 위원장은 분과회의의 심의사안에 따라 각 해당 위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켜 진행한다.

**제5조 (의결)** 위원회의 의사결정 정족수에 관하여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 (회의록)**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작성, 비치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7조 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폐지) 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‘기획위원회 규정’은 폐지한다.

③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<신설 2019.1.17.>

## 대학 발전계획 세부 운영지침

### 1. 대학 발전계획 수립 절차

- 가. 대학 발전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.
- 대내외 환경분석
  -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
  - 지자체, 산업계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  - 대학 발전계획 전략 수립 및 세부 실행과제 수립

나. 대학 발전계획은 미래전략위원회,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다.

### 2. 실무위원회

- 가. 대학 발전계획의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대학 행정부서 팀(실)장을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나.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.
-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모니터링
  - 전략과제 실행부서간 소통 및 업무 협의
  - 발전계획 추진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기초자료 작성 및 점검

### 3. 자문위원회

- 가. 대학 발전계획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.
- 나. 자문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외부위원은 지자체, 산업계 및 동문 등에서 위촉한다.
- 다. 자문위원회는 대학 발전계획의 수립, 추진, 성과평가 및 환류 등 성공적인 발전계획 운영을 위한 자문을 실시한다.

### 4. 발전계획 운영 및 평가

#### 가. 발전계획 운영

- 발전계획에 의거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.
-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는 사업운영 및 진행사항을 월별로 점검한다.
- 부서간 협업을 필요한 과제는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 시행한다.

#### 나. 발전계획 평가

- 발전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. 또한, 당해연도 진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발전계획 성과평가 결과는 대학 구성원에게 공지하며, 차년도 부서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시 환류한다.